

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

(1)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(조특법 §104의27 신설)

현행	개정안								
<신설>	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○ (대상) 고배당 상장법인* 주주(거주자) *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❶ 또는 ❷ 충족 법인 ❶ 배당성향 40% 이상 ❷ 배당성향 25%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% 이상 배당 증가 - (제외) 공모·사모펀드, 리츠, 투자목적회사(SPC) 등 ○ (과세특례)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- (대상) 현금배당액(중간·분기·결산배당 포함) - (적용세율) 3단계 누진세율 <table><tr><td>과세표준</td><td>2천만원 이하</td><td>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</td><td>3억원 초과</td></tr><tr><td>적용세율</td><td>14%</td><td>20%</td><td>35%</td></tr></table> ○ (적용기간) '28.12.31.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	과세표준	2천만원 이하	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억원 초과	적용세율	14%	20%	35%
과세표준	2천만원 이하	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억원 초과						
적용세율	14%	20%	35%						

〈개정이유〉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6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